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4월 18일(목) 11:00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) 이후 사용

배포일시	2019. 4. 17.(수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담당과장	이민영(044-203-5540)	담 당 자	김정두 사무관(044-203-5568)

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

- 산업부, 산단 입주 업종 네거티브 시범 전환 등 9개 과제 추진 -

□ 정부는 4월 18일(목) 오전, **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(이낙연 총리 주재)를 개최하여, **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*」** 을 논의·확정했습니다.

* 시장·기업·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 발굴(방안 확정 전 旣조치 22건 포함)

○ **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**은 **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**으로 제시된 이후('17.9월) **관계부처 합동**으로 **지속적으로 추진***되어 왔으며,

* (1차 개선) △금융 △바이오 △자동차·선박 분야 등 38건(산업부 3건 포함) ('18.1월)
(2차 개선) △신소재 △스마트공장 △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(산업부 2건 포함) ('18.10월)

○ 신제품·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△**입법방식을 유연화**하거나 △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**규제 샌드박스* 도입이 핵심**입니다.

*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유예·면제하는 제도 → 산업융합촉진법·정보통신법(1.17 시행), 금융혁신법(4.1 시행) 등

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하여, **신제품·서비스의 시장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**하고, 해당 기업에 대해 **적기에 최적의 지원**이 가능하도록 발굴된 **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금년 중에 추진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금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**'네거티브 존'을 시범 도입**할 예정입니다.

* (예)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면적(예: 30% 이내) 또는 복합용지(산업·지원·상업시설 등 복합입주) 등

-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제한*되고 있으나, '네거티브 존'이 도입되면 **입주 업종을 유연화**하여 **신산업 출현**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,

* (예①) 드론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연계 서비스업(체험·교육, 항공촬영 등)은 불가
* (예②) 전자상거래업 입주불가로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물류센터 설립 애로

- 제조·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소재·부품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5종류로 한정되어 있는 **소재·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**하여 **확대**할 예정입니다.

- 이에 따라 탄소섬유,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·부품도 대상 업종 범위에 포함되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
○ 아울러, 현재 15개 부문(기계, 선박 등) 48개 전문분야(용접, 금형 등)로 한정된 **엔지니어링 기술 범위**도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 출현에 따라 **탄력적으로 추가***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.

*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 추가

□ 이 외에도 뿌리 기술·산업 범위 유연화,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등의 과제들도 적극 추진하여, 미래의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※ 세부과제(9건) 개요 및 추진계획은 붙임1 참조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정두 사무관(☎ 010-4596-35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산업부 네거티브 규제전환 세부과제 개요 및 추진계획(9건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1	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化	기존 산업단지 내 "산업시설용지"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조업(25종), 지식산업(27종), 정보통신산업(5종), 기타(12종)로 한정 개선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'네거티브 존' 도입 → 단계적 확대 *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	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등	'19.9월
2	소재·부품산업 범위 유연화	기존 섬유직물, 공업용 종이 등 관련 범위를 15종류로 한정 개선 새로운 유형의 소재·부품*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* (예시) 탄소섬유, 3D 프린터, 무인항공기(드론) 제조업 등	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	'19.7월 (법제처 일괄입법)
3	소재·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	기존 소재·부품기술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* * 국·공립연구기관, 대학, 소재·부품 전문기업,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종류 개선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(대·중견·중소기업)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* *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"산업기술개발사업" 수행기관으로 확대	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제23조	'19.7월 (법제처 일괄입법)
4	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	기존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가 15개 부문, 48개 전문분야*로 한정 * (부문) 기계, 선박, 항공우주, 금속, 전기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도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	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	'19.6월
5	뿌리 기술·산업 범위 유연화	기존 주조, 금형, 소성가공 등 관련 기술 및 산업을 한정적으로 열거 개선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	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, 2	'19.7월 (법제처 일괄입법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6	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	기존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을 ①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, ②항공우주산업 사업자*가 10개 이상인 경우로 한정 * "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인 사업자"로 한정 개선 산업단지 개념(종류·범위)*, 사업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* 업계 실태조사(~'19.上) 및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마련(~8월)	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제9조의2	'19.12월
7	산업의 범위 유연화	기존 산업발전법에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를 제조업,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88개 종류*에 한정 * 제조업, 폐기물 처리업, 소방시설 공사업, 도매 및 소매업, 도로 화물 운송업, 화물 취급업, 방송업, 병원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* 업종간 융·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 업종 즉각 수용 가능	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	'19.12월 (법제처 일괄입법)
8	기업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	기존 기업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분야를 4종류*로 한정 * ①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, ②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 개발, ③기술·인력 제휴, ④자원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개선 새로운 유형의 사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* (예시)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·판매 촉진·홍보·정보시스템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등	산업발전법 제11조	'19.12월 (법제처 일괄입법)
9	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	기존 기업간 협력촉진을 위해 협력 중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 정부의 지원 대상 범위를 9종류로 한정* * 대한상공회의소, 사업자단체,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개선 새로운 유형의 지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* (예시) 타법상의 사업자단체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등	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	'19.12월 (법제처 일괄입법)

붙임2 **산업부 네거티브 규제전환 기 발표과제 주요내용(5건)**

구분	과제명	내용	분류
1차 개선 ('18. 1월)	**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 분야를 포괄적으로 전환** (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)	▪ **(기존)**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를 7개 분야(시각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)로 구분하여 운영 ▪ **(한계)**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 또는 경계가 모호한 디자인 분야 포괄에 한계 ▪ **(개선)**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('18.10.)	포괄적 개념정의
	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이 완화되는 비제조업 범위 확대 (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)	▪ **(기존)** 산단내 입주가능한 비제조업 중 15개 업종은 기준건축면적률* 적용 일부 완화 가능 (40% → 20~35%) * 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▪ **(한계)** 15개 업종 외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은 기준건축면적률 부족으로 산업용지 분양 곤란 ▪ **(개선)** 관리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일정 비율 內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 ('18.3.)	네거티브 리스트
	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제도 (positive 규제) 폐지 (친환경산업법 제23조)	▪ **(기존)** 재제조 가능 제품 및 부품 종류를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여 고시(50개) * 재제조 품목이 아닌 경우 품질인증 불가하여,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정부지원 혜택 불가 ▪ **(한계)** 국내 재제조 지정 품목이 해외에 비해 적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을 저해 ▪ **(개선)**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제도 폐지, 대상 제품 요건·기준 충족시 허용 ('18.6월 발의, 심의 중)	유연한 분류체계
2차 개선 ('18. 10월)	**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위임 사항 확대** 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)	▪ **(기존)**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만 시도지사에 위임 ▪ **(한계)** 개발계획 승인 진행 과정에서 지연 발생 ▪ **(개선)** 중요 사항 이외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 위임 ('18.12월 발의, 심의 중)	네거티브 리스트
	연구·실증용 드론에 한해 수소용기 우선허용 (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정)	▪ **(기존)** 연료전지 드론용 수소용기는 일반용만 허용 * 수소용기 제조는 일반용과 차량용으로 구분 ▪ **(한계)** 차량용 제조기준 미적용으로 연료전지 드론용 수소용기 성능개선에 한계 ▪ **(개선)** 연구·실증용 드론에 한해 차량용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허용 ('18.4.)	규제 샌드박스 (법령 제정)